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47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이용우·이학영·신장식

정혜경 · 한창민 · 윤종오

전종덕 · 용혜인 · 김태선

황정아 • 박홍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전면 확대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을 삭제함 (안 제11조제1항).

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적용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본문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을 "근로자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 제11조(적용 범위 등) ① 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 근로자를------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 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 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② 국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하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적용할 수 있다.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